
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구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(안 제8조·제9조).
- 시장운영자 및 농수산물온라인도매판매자가 거래중개인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, 거래중개인을 임면하는 경우 농수산물온라인거래 플랫폼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도매시장법인·중도매인 등이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(안 제14조).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II. 검토의견

1. 의제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겸업 금지 명확화(안 제8조제5항, 제9조제4항)

- 안 제8조제5항에서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농·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의제하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,

안 제9조제4항에서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도매인을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의제하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.

- 이는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의제되는 경우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취지이나,

해당 제정안에서는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

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지, 등록은 가능하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.

-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,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각각 열거하고 있고,

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한 후 가능한 업무형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 제8조제5항 또는 안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제되는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의 경우는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- 따라서 안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도매판매자 또는 온라인도매구매자로 의제되는 경우 온라인도매구매자 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제정안	수정의견
제8조(온라인도매판매자의 등록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	제8조(온라인도매판매자의 <u>등록 등</u>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그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

제정안	수정의견
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온라인도매구매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1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 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와 <u>그 중앙회</u>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,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도매시장법인”이라 한다) 3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4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비축·출하사업 및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수산물 비축·출하사업의 수탁기관	라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제9조에 따른 온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.</u> 1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, 조합 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<u>농업협동조합중앙회</u>(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),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생산자 관련 단체 2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도매시장법인”이라 한다) 3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4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비축·출하사업 및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수산물 비축·출하사업의 수탁기관

제정안	수정의견
제9조(온라인도매구매자의 <u>등록</u>)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(이하 “중 도매인”이라 한다)은 그 자격이 유 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 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 으로 보는 자는 <u>온라인도매판매자</u> <u>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	제9조(온라인도매구매자의 <u>등록 등</u>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(이하 “중 도매인”이라 한다)은 그 자격이 유 지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온 라인도매구매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본문에 따라 등록한 것 으로 보는 자는 <u>제8조에 따른 온라</u> <u>인도매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.</u>

2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